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1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06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안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“통합방위협의회” 와 “민방위협의회” 를 『통합방위협의』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

주요골자

- 가.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산시민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협의회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.
- 다. 협의회 소집 사유와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위원의 회의참여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근거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7조」(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, 협의회 통합운영)
- 「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」(통합방위지원본부)
- 「민방위기본법 제7조」(지역민방위협의회)
-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」(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(기능 유사 조례 통폐합 운영계획)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에 따른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안산시민방위협의회를 「통합방위법」 제7조에 따라 『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』로 통합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2.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3.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4. 국가정보원 관계자
5. 안산경찰서장
6. 안산소방서장
7. 안산교육장
8.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
9. 안산시 재향군인회장
10. 안산시 소속 공무원
11.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자

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방위 대비책
2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과 지원대책
4. 민방위계획
5.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
6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간사·서기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.

1. 총무담당 간사 : 총무과장
 2. 심리전담당 간사 : 문화공보담당관
 3. 민방위담당 간사 : 민방위업무담당 과장
-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참석수당)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방위지원본부) 「통합방위법」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하여 안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
2.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3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

제8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

되,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

-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통합방위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.
-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-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- ⑤ 그 밖에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협의회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산시민방위협의회 운영규정」에 따른 안산시 민방위협의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실과		재난관리과
입 안 자	실 · 국장 직위 · 성명	재난관리과장 한상철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민방위담당 이태성
	담당자 성명 · 전화	이태성 (2161)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1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9. 22.
제 안 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의 수를 수정하고, 구성원을 명확히 함.
- 협의회 심의사항과 정기회의 횟수를 수정함.

2. 주 요 골 자

-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고, 구성원 중 시의회의원, 안산시 소속 공무원,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제외하였음(안 제2조).
- 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,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정함(안 제3조).
-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분기1회로 수정함(안 제5조).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0명”을 “12인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중 제1호, 제3호, 제5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장
3.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5. 안산(상록·단원)경찰서장
9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제3조 각 호 중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,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.

1.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
2.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가목, 나목 및 다목에 관한 사항
3.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제1항의 각호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총무업무 담당과장”으로, “문화
공보담당과”을 “홍보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, 임시
회”을 “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
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”으로 한다.

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<u>안산시의회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안산경찰서장</u></p> <p>6.~ 8. (생략)</p> <p>9. <u>안산시 재향군인회장</u></p> <p>10. <u>안산시 소속 공무원</u></p> <p>11. <u>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자</u></p>	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 ----- ----- 12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<u>안산시의회 의장</u></p> <p>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<u>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</u></p> <p>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<u>안산(상록·단원)경찰서장</u></p> <p>6.~ 8. (원안과 같음)</p> <p>9. <u>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</u> <u><삭제></u></p> <p>10. <u>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자</u> <u><삭제></u></p>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(생략) 1. 통합방위 대비책 2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 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과 지원 대책 4. 민 방위계획 5.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6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	제3조(협의회 심의사항) (원안과 같음) 1.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.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가목, 나목 및 다목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〈삭제〉 〈삭제〉 〈삭제〉
제4조(간사·서기) ① (생략) 1. 총무담당 간사 : 총무과장 2. 심리전담당 간사 : 문화공보담당관 3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간사·서기) ① (원안과 같음) 1. 총무담당 간사 : 총무업무 담당과장 2. 심리전담당 간사 : 홍보업무 담당과장 3. (원안과 같음) ② (원안과 같음)
제5조 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 ② (생략)	제5조 (회의) ① -----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----- ---. ② (원안과 같음)

원 안	수정안
부 칙	부 칙
<p>제2조 (협의회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산시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」에 따른 안산시 민방위협의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〈삭제〉</p>